

한국원자력학회 연구윤리·진실성 검증규정

제정 2009. 8.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조 2항 및 4항의 규정에서 정한 회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와 원자력기술에 관한 자체·수탁연구, 자문 및 평가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국문논문집, 영문논문집,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관,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대상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5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표절)

- ①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③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7조 (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8조 (중복 게재) ①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②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 ①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 ② 제보는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 및 보고)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편집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제보내용이 제5조 내지 제8조의 사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② 예비조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명 및 자료 제출요구)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전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보고

제12조(조사결과의 판정)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내용과 소명 또는 제출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판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 게재논문 삭제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조사결과보고) ①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 판정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 대해 이사회에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후속조치) 학회 회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이의제기)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③ 학회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비밀보장)

-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권리 보호

- 제17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보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8조(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 ①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 부정행위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